##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8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이언주·민병덕·민형배

이재관 • 이상식 • 정성호

문정복 • 이광희 • 오세희

김동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	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
제한)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	제한) ①
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	
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	
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	
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	
시・군계획사업(이하 "도시・	
군계획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	
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	
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	
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·	
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	
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	
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	
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	
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	

형질변경

가. ~ 마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의2. (생략) 2. ~ 9. (생략) ② ~ ① (생략) -----

\_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
립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
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
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
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

1의2. (현행과 같음)

2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① (현행과 같음)